

[2024년도 경찰간부후보시험 형사법 기출문제]

2024년도 경찰간부후보시험이 그 연도와는 어울리지 않게 2023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일부 사람들이 저를 “저 새끼는 매일 시험문제나 출제위원만 깐다”라고 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비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진실을 말할 뿐이고요, 다만 그 표현이 때로는 조금 과격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수험생분들 합격을 위하여 제가 20년 이상 연구, 소통, (저의 또는 저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출제자의 필독서 그리고 수험생의 필독서”라는 저의 예전 책 교재 머리말이 생각나네요. 시험보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민사법과 형사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민형사법 자료실 !! DAUM 또는 NAVER 카페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

<형 법>

1. 출제 내용(진도 구분) * 박스문제는 4개 지문으로 처리함 ♣ 160개 지문(4개 지문 × 40문제) 중 형법 관련 116개 지문

편	장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기 초	기초이론	죄형법정주의	8	8	2.0
		형법의 적용범위			
범 죄 론	구성요건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3	0.7
		구성요건론 일반			
		범죄의 주체와 객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의와 구성요건의 착오	3		
		위법성론 일반	1		
		정당방위	4		
	위법성론	긴급피난		5	1.2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책임론 일반	4		
	책임론	책임능력(원자행위)		8	2.0
		위법성인식과 금지의 착오	4		
		기대가능성			
		장애미수	4		
	미수론	중지미수		6	1.5
		불능미수	1		
		예비음모	1		
		공범론 일반		5	1.2
	공범론	공동정범			
		간접정범	1		
		교사범	4		
		방조범			
		공범과 신분			
	특수한 범죄유형	부작위범	5	11	2.7
		과실범	6		
		결과적 가중범			
	죄수론	일죄와 수죄	5	5	1.2
		수죄의 처벌			
형 벌 론	형벌론	형벌의 의의와 종류		4	1.0
		형의 양정			
		누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소멸기간	4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개 인 적	생명신체에 관한 죄	살인	1	9	2.2
		상해와 폭행	8		
		낙태			
		유기와 학대			

개 인 적 법 의	자유에 관한 죄	협박	1		11	2.7
		강요	3			
		체포와 감금	4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3			
	명예 등에 관한 죄	명예	5		9	2.2
		신용, 업무와 경매	4			
	사생활에 관한 죄	비밀침해			1	0.2
		주거침입	1			
	재산에 관한 죄	재산죄 일반			13	3.2
		절도	2			
		강도	1			
		사기	3			
		공갈	2			
		횡령	2			
		배임	2			
		장물				
		손괴	1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사 회 적 법 의	공안에 관한 죄	공안, 폭발물			5	1.2
		방화와 실화	4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	1			
	건강에 관한 죄	먹는 물과 아편			0	0
		통화				
	신용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4	1.0
		문서	4			
		인장				
	도덕에 관한 죄	성중속			1	0.2
		도박과 복표				
국 가 적 법 의	국가존립에 관한 죄	신앙	1		0	0
		내란과 외환				
	국가기능에 관한 죄	국기와 국교			8	2.0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4			
		도주와 범인온닉				
		위증과 증거인멸	2			
		무고	2			

2. 출제 내용(총론·각론) - 형법 관련 116개 지문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총 론	55 (47%)	
각 론	61 (52%)	

3.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 - 형법 관련 116개 지문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13 (11%)	
조 문	7 (6%)	
판 례	96 (82%)	

4. 문제 형식 - 형사법 40개 문제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22 (55%)	
박스형	16 (40%)	
사례형	2 (5%)	

5. 출제된 최신 판례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2024년도	2023년 7월 29일	대법원 2023. 4.27. 2020도6874 레이테크코리아 사건

<형사소송법>

1. 출제 내용(진도 구분) * 박스문제는 4개 지문으로 처리함 160개 지문(4개 지문 × 40문제) 중 형사소송법 관련 44개 지문

편	절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수 사 와 의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4		17	4.2
		수사의 조건				
		수사의 단서	5			
		수사의 일반원칙	2			
		임의수사	6			
공 소 의	강제수사(처분)	체포구속	8		16	4.0
		구제수단(접견적부상보석 등)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8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				
제 기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	2		4	1.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			
		공소제기후 수사				
		공소(권)와 기본원칙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공소시효				
증 거	서 론	증거의 의의·종류 등			0	0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	1.2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5			
		증거동의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	2		2	0.5
		탄핵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 - 형사소송법 관련 44개 지문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0 (0%)	
조 문	18 (41%)	
판 례	26 (59%)	

3. 문제 형식 - 형사법 40개 문제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22 (55%)	
박스형	16 (40%)	
사례형	2 (5%)	

4. 출제된 최신 판례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2024년도	2023년 7월 29일	대법원 2022. 6.22. 2022도1452 사기피의자 몰카 발견사건

이 기출문제 해설을 볼 수 있는 분은 아래 밑줄친 카페의 '특별회원'으로 한정됩니다. 특별회원이 아닌데 이 자료를 본다는 것은 부정(不正)하게 공부하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 민사법과 형사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민형사법 자료실 !! DAUM 또는 NAVER 카페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과 판례이므로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②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묻지 않는다.
- ③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본다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해설

-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17. 97도3349 판례변경 처벌 사건)
- ②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대법원 2011. 3.10. 2011도168 최현진 강남구의원 사건
- ④ 대법원 1997. 3.20. 96도1167 손승 공직선거법 자수 사건

정답 ①

2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 ㉡ 정당방위 상황을 이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자의 공격행위를 유발하는 의도적 도발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방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 ㉢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23. 4.27. 2020도6874 레이테크코리아 사건

㉔ 의도적으로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이른바 자초침해(自招侵害)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㉔ 대법원 1996. 4. 9. 96도241 배척 사건

정답 ③

7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 - 심리적 책임론
- ㉡ 인간의 행위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책임의 근거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 - 규범적 책임론
- ㉢ 책임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인 사실인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 도의적 책임론
- ㉣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관계로 이해하여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범적 비난이 책임이다. - 사회적 책임론

- ① $\Gamma \circ \mathbb{L} \circ \mathbb{E} \circ \mathbb{E} \circ$ ② $\Gamma \circ \mathbb{L} \times \mathbb{E} \circ \mathbb{E} \times$
③ $\Gamma \times \mathbb{L} \circ \mathbb{E} \times \mathbb{E} \circ$ ④ $\Gamma \times \mathbb{L} \times \mathbb{E} \times \mathbb{E} \times$

해설 다른 교수님의 책을 보며 이렇게 해설을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윤경근 선생도 모른다. 이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정찰청장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물론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⑦ 이는 **도의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㉔ 이는 사회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㉔ 이는 심리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㉒ 이는 **규범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④

8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그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 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초당만 골라 성관계사건

㉔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불법 다시보기 사이트 사건

㉓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7.15. 2008도11679 **일본포르노 수신기 설치사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포르노(porno)가 불법이다. 약간 알기성인데 판례 사건명을 다시 읽어보아라.

정답 ③

9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형식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 미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 ㉡ 실질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범의침해의 ‘직접적 위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 ㉢ 주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가벌적 미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 ㉣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실행에 대한 직접적 행위가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로 실행의 착수에 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단점을 제거하고 양설을 타협하기 위해 제시된 절충적인 견해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각 학설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모든 항목이 옳다. 7번이나 9번 문제를 출제한 자는 경찰병원에 가서 꼭 진료받기를 추천한다. 경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화번호는 02-3400-1294이다.

10 교사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 甲은 강도의 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형이 더 무거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②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강간을 실행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절도죄의 예비·음모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 ③ 甲이 乙에게 사기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공갈을 실행한 경우 교사내용과 실행행위의 질적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으므로 甲은 교사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甲이 乙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甲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② 형법 제31조 제3항, 제343조

- ③ 교사범이 사기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공갈을 한 경우 교과서에서는 이를 ‘양적(量的) 초과’ 교사의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다(절도를 교사하였는데 강도를 한 경우와 유사하다). 이 경우 교사자는 **사기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경찰청장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 ④ 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병신을 만들어라 사건**

정답 ③

11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의하여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자가 정범에게 부작위에 나가도록 결의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부작위하겠다는 부작위범의 결의를 강화하는 형태의 방조도 가능하다.

- ① ㉠ O ㉡ O ㉢ O ㉣ O ② ㉠ O ㉡ X ㉢ O ㉣ X
- ③ ㉠ X ㉡ O ㉢ X ㉣ O ④ ㉠ X ㉡ X ㉢ X ㉣ X

해설

㉠ 대법원 2004. 6.24. 2002도995 **보라매병원 사건**

㉡ 대법원 2021. 5.27. 2020도15529 **고양시 도시개발 환지계획 사건**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11**)

㉣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보증인 지위가 없는 자도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모두 성립할 수 있다. ‘교사’와 ‘방조’의 정의는 다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하지 않는다.

12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연속범은 개별적인 행위가 범죄의 요소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해야 하며, 동일한 범의의 침해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피해범의 동일성에 따라 보호범의 동일성을 같이 하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② 집합범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해 구성요건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말하며, 집합범의 종류로는 영업범과 상습범이 있다.
- ③ 접속범은 동일한 범의에 대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불가분하게 접속하여 행하여지는 범행형태로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된다.
- ④ 결합범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결합범 자체는 1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개 행위의 결합이고, 수개 행위의 불법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된다.

해설 ① 포괄일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9. 87도58 사기죄 확정판결 주장사건)

②④ 통설의 입장으로 옳은 설명이다. 포괄일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분의 기본서를 참고하라.

③ 대법원 2009. 4. 9. 2006도9022 클라인포스트 기술 유출사건

13 형의 시효·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7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병과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그 벌금형 역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③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이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④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형법 제78조 제5호

②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3. 96도33 벌금 2억5천 징수명령 사건)

③④ 형법 제79조 제1항·제2항

14 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甲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째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④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피해자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10.22. 91도1832 코피 강간피해자 사건)
- ② 대법원 2016.11.25. 2016도15018 오피스텔 몸싸움 사건, 대법원 2017. 6.29. 2017도3196 졸피렘 수면제 사건 1
- ③ 대법원 2000. 2.11. 99도4794 젖가슴grab 사건
- ④ 대법원 1996.12.10. 96도2529 거목초밥집 사건

정답 ①

15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③ 甲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한 후 A에게 듣게 한 경우 甲이 A의 청각기관을 자극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끝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16.10.27. 2016도9302 조금씩 전진 사건
- ② 대법원 2010. 5.27. 2010도2680 생일빵 사건
- ③ 대법원 2003. 1.10. 2000도5716 심수봉 사건
- ④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끝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10.14. 86도1796 조용히 얘기나 하자 사건)

정답 ④

1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도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화물차주 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내과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 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

해설

- ① 대법원 2002. 4. 9. 2001도6601 설악워터피아 사건
- ②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7. 9. 2009도2390 토마토상자 사건)
- ③ 대법원 2003. 1.10. 2001도3292 지주막하출혈 식물인간 사건
- ④ 대법원 2003. 8.19. 2001도3667 간호실습생 정맥주사 사건

정답 ②

17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② 체포되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 ③ 구 정신보건법(2015. 1.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에 불응하고 방치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한다.

해설

- ①② 대법원 2020. 3.27. 2016도18713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체포시도 사건
- ③ 구 정신보건법(2015. 1.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2016. 5.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18. 2017도7134 노숙인으로 돈벌이 병원 사건)
- ④ 대법원 2000. 2.11. 99도5286 강제 드라이브 사건

정답 ③

18 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A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甲의 행위는 협박미수죄에 해당한다.
- ②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 ③ 甲이 A를 폭행하였으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이 없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④ 공무원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 A에게 자신을 위하여 재산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A는 甲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비록 甲의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강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해설

- 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1. 1.27. 2010도14316 회찰 2차루 사건)
- ②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2018도1346 주차방해 사건)
- ③ 대법원 2012.11.29. 2010도1233 업무일지작성 지시사건
- 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 남용이나 뇌물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29. 2018도13792全美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1)

정답 ③

19 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제3자에게 “A가 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②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게시행위로서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된다.
- ④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란에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란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 ① 피고인 甲이 단지 “A가 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라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24. 2009도6687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사건)
- ② 대법원 2011. 8.18. 2011도6904 군수 보좌관 구속 사건
- ③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인터넷 댓글 공소시효 사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행위로서 범행이 종료하는 것으로(게시물을 삭제하는 시점에 범행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 ④ 대법원 2021. 3.25. 2017도17643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사건

정답 ①

20 신용과 업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 ② 학칙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甲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면접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A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므로 甲과의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③ 甲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A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A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甲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甲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④ 비록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 ① 대법원 2013. 3.14. 2010도410 연소주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 ② 대법원 2018. 5.15. 2017도19499 정유라 이대 입시비리 사건
- ③ 대법원 2023. 3.16. 2021도16482 사무장병원 의사진료 방해사건
- ④ 乙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甲이 자신이나 乙 및 자신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이후 부교수로 승진한 경우 이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따라서 승진 임용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었을 경우 甲이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므로 (甲이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승진 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10. 2009도4772 조선이공대 논문대작 사건)

정답 ④

21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③ 甲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A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 당시 A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
- ④ 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17.10.12. 2016도16948 기습삼입 사건
- ② 대법원 2021. 2. 4. 2018도9781 알코올 블랙아웃 or 알코올 패싱아웃 사건
- ③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女, 18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으나,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10.28. 2021도7538 여학생 등에다 소변 사건)

④ 대법원 2019. 3.28. 2018도16002全美 만취한 것으로 오해 사건

정답 ③

22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 전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甲이 A의 방에서 A를 살해한 후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비로소 A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그 물건에 대한 A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 甲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1998.11.24. 98도2967 무주리조트 사건

㉡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26. 2014도9567 강릉 택시강도사건)

㉢ 대법원 1993. 9.28. 93도2143 자취방 살인사건

㉣ 대법원 2002. 4.26. 2002도429 광천동 소나타 무단운전 사건

정답 ③

23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 ㉡ 피해자 범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모든 항목이 옳다.

- ㉠ 대법원 1992. 9.14. 92도1506 부동산 갈취 기수시기 사건
㉡ 대법원 2017. 9.26. 2017도8449 저축은행 대출사기 사건
㉢ 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대우조선 분식회계·사기대출 사건
㉣ 대법원 2012. 8.30. 2012도6157 접취당한 40억 회수사건

정답 ④

24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甲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乙로부터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3 항목이 옳다.

- ㉠ 대법원 2022. 6.23. 2017도3829 **소속 임차보증금 양도사건** 유사한 사례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7. 5.11. 2006도4935 **용역보증금 양도사건**, 대법원 1999. 4.15. 97도666 **소속**)는 폐기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12.11.15. 2012도6676 **Q22합금 특허사건**
- ㉢ 대법원 2020. 8.27. 2019도14770 **소속 레이저가공기 동산담보 사건**
- ㉣ **원심은**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甲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甲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17.10.26. 2017도9254 **범죄수익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사건**)

정답 ③

25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② 모델에 투숙한 甲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잠이든 사이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甲이 모델을 빠져나오면서도 모델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해당한다.
- ③ 甲은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모두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④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인 甲이 고의로 방화행위를 하여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한 바 없고, 그 결과 발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던 乙을 방화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 ① 대법원 2013.12.12. 2013도3950 영종도 폐가 방화사건
- ② (1)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야 한다. (2)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델을 빠져나오면서도 모델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14. 2009도12109 모델 담뱃불 화재사건)
- ③ 대법원 1998.12. 8. 98도3416 강도 방화살인사건
- ④ 대법원 1990. 6.26. 90도765 동의대 참사 사건11

정답 ②

26 공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무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지만 신분권이 없는 乙은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해설

- ① 대법원 2003. 2.26. 2002도4935 엄마력락 누나심부름 사건
- ② 대법원 2010. 6.24. 2008도11226 김해 도박단 좌주기 사건

③ 대법원 2020. 3.26. 2019도16592 범죄목적 주식회사 설립사건

④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7. 91도2887 예비군훈련확인서 사건)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乙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공동정범’을 말한다)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27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A의 공무집행을 甲이 방해한 경우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甲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甲에게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A가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난 甲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A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도심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공무원 A의 철거대집행에 대항하여, 甲이 A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법원 2015. 5.29. 2015도3430 국민권익위 기간제근로자 사건

②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31. 2018도15213 서울구치소 잠입취재 사건)

③ 대법원 2018.12.13. 2016도19417 골통 아줌마 사건

④ 대법원 2010.11.11. 2009도11523 서울광장 천막철거 사건

정답 ②

28 위증과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에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달리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 ③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서 증인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예까지 예외없이 위증죄가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①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22. 2022도3413 국민신문고 약국 고발사건)
- ② 대법원 2007.12.27. 2006도3575 위임계약 위증 사건
- ③ 대법원 2010. 1.21. 2008도942 손승 해운대 노점 싸움사건
- ④ 대법원 2019. 7.11. 2018도2614 직장선배 기습키스 사건

정답 ①

2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해설

- 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 수사규정 제47조 ‘수사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범명이 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칭하였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 ② 수사규정 제6조 제1항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수사규정 제3조 제3항)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제2항

정답 ③

30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의 정도는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는 유효하나,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 ① ㄱㄴ ② ㄱㄴㅇ
- ③ ㅇㅈㅊㅌ ④ ㄱㄴㅇㅌㅍ

㉠ 대법원 1984.10.23. 84도1704 용호여인숙 간통 사건

㉡ 대법원 2022. 5.26. 2021도2488 부채자 재산관리인 형사고소 사건

㉢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전문)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7. 6. 9. 87도857 강간피해자 부모 고소사건) (후문)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할머니 추행범 고소사건) 乙이 아니라 피해자 A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전문은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이고, 후문은 임의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이다.

㉤ 원심은,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옳다.(대법원 2004. 3.25. 2003도8136 쌍방 고소취하 조정성립 사건)

정답 ①

31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④ 피의자인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제200조, 제221조 제1항·제2항

②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③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교도소 소변검사 사건)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제2항

정답 ③

32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신문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반드시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는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서를 열람하거나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사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이 없음에도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도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해설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래 내용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제2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

- ② 수사규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③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후방착석 요구 사건
-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정답 ①

33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없이 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③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체포사유로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이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해설

- ①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
-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③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95조)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1.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인치구금할 장소
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
8.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 ④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6

정답 ③

34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 ㉢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해설 ㉠ 헌법재판소 1997. 3.27. 96헌바28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12. 96도46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 ㉢ (전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후문) 동법 제201조의2 제8항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정답 ④

3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2 항목이 옳다.

- ㉠ 대법원 2017.12. 5. 2017도13458 최영길 의원 사건
- ㉡ 대법원 2017. 9.21. 2015도12400 정상혁 보은군수 사건
- ㉢ 원심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준항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도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4.16. 2019도3526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 사건)
-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더라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 1. 99도 161 민혁명 연락책 사건)

정답 ②

36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대부분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인 이상 소지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㉑ 항목만 옳다.

①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임의제출된 위장형 카메라 및 그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처럼 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방실 내 나체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벽 등에 은밀히 설치되고, 촬영대상 목표물의 동작이 감지될 때에만 카메라가 작동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그 설치 목적과 장소, 방법, 기능, 작동원리상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의 관점에서 그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구별되는 별도의 보호 가치 있는 전자정보의 혼재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별도의 조치가 따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내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11.25. 2019도7342 **로텔 몰카 압수사건**)

②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유홍주점 탈세 사건**)

③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시 참여권 보장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

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대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7. 2021도11170 정경심 교수 사건)

- 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6.22. 2022도1452 사기피의자 몰카 발전사건) 이 판례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아래 비교판례(2017도9747)는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된 경우이다.

2022도1452 판결의 사실관계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하였다. 경찰의 압수는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비교판례(2017도9747) 판결의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을 ‘피고인이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간첩 통신수단으로 사용한 중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제공하는 이메일서비스의 총 10개 계정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설시점부터 2015.11.24.까지 사이의 이메일 계정, 받은 편지함 등 각종 편지함, 임시 보관함 등 각종 보관함(스팸·휴지통, 주소록 등 기타 내용 포함), 이메일과 연결된 드라이브 내 각종 문서함(휴지통·캘린더 등 기타 내용 포함)에 송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동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 동 내용을 저장한 저장매체(메일 헤더가 기록된 원본내용 포함)’로,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를 ‘서울시 송파구 (주소 생략) 소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색·검증)’로, 압수수색·검증방법으로 ‘국가 정보통신 인증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용 PC에서 영상녹화 및 동 기관의 전문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중국 공소외 1 회사 및 중국 공소외 2 회사의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위 이메일 계정·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범증 자료 출력물 및 동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한 저장매체 봉인·압수’로 각 특정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 ㉕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유홍주점 탈세 사건

정답 ①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장사진 중 ‘사진 가운데에 위치한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위 ‘현장사진의 촬영일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서류가 다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

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 ④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며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 ① 대법원 1997. 9.30. 97도1230 나체사진 사건
 ② 대법원 2019. 8.29. 2018도14303 손승 국정농단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
 ③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30. 2012도 725 부산저축은행 전직원 공갈사건)
 ④ 대법원 2016. 2.18. 2015도16586 통역인 진정성립 증언사건 이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재는 삭제된 조문이다)에 대한 판례인데, 그 취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문 첫 번째 줄에서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안내하지만 경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화번호는 02-3400-1294이다. 간호사들이 매우 친절해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HOME > 진료안내 > 진료과/의료진 > 정신건강의학과 > 진료과소개

진료과소개

의료진소개

진료시간표

정신분열, 정서장애(조울 정신병), 신경증(노이로제), 약물 및 알콜중독, 노인정신병, 공황장애 간질, 두통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38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범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범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범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